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521172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류태근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4. 11. 1.

판결 선고2024. 11. 2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피고들은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대여금 계약 체결

1) 원고는 2020. 9. 15. D과 사이에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20. 10. 15.,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D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계약서인 별지와 같은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 정한 변제기인 2020. 10. 15.까지 5,000만 원 만을 변제하였다.

라. D은 변제기를 연기하여 주면 그 변제기 안에 남은 대여금 3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27.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20. 11. 15.까지로 연기하여 주었다.

바. D은 2020. 10. 27. 별지와 같은 대부거래 연기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잔존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D을 위하여 각 보증을 하였는데, 대부거래 연기약정서에 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잔존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D을 위하여 각 보증을 한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C은 D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증을 하였으나,

2020. 11. 20. D을 퇴직하였다.

D은 보증인 교체 및 보증 해제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 C도 퇴직 후 D에 대하여 보증인 교체 및 보증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D이 보증인 교체 및 보증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

2) 판단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여금계약은 잔존 원금 및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므로, 피고 C이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을 들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우연

별지